#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80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 박수민·김민전·김소희

임종득 · 김선교 · 박준태

조지연 • 이인선 • 이종욱

서명옥 • 박수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 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 조).

#### 법률 제 호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8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광료 부과요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	위원회) ①		
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			
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의2. 제18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광료) ① (생 략)	제18조(조광료)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광료 부과요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	③ 그 밖에		
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